
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

(앞쪽)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증자 | ① 성명 | ② 주민등록번호 | ③ 거주구분 []거주자 []비거주자 |
| | ④ 주소 | ⑤ 전자우편주소 | |
| | ⑥ 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 | ⑦ 증여자와의 관계 | |
| 증여자 | ⑧ 성명 | ⑨ 주민등록번호 | ⑩ 증여일자 |
| | ⑪ 주소 | ⑫ 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 | |

1. 증여재산

| ⑬ 재산구분코드 | ⑭ 재산종류 | ⑮ 지목 또는 건물·재산종류 | ⑯ 소재지·법인명 등 | | ⑰ 수량 (면적) | ⑱ 단가 | ⑲ 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국외재산여부 | 국외재산국가명 | | | |
| | | | []여 []부 | | | | |
| | | | []여 []부 | | | | |
| | | | []여 []부 | | | | |
| 계 | | | | | | | |
| ⑳ 사후관리 위반코드 | | | | | | | |

2.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

| | |
|--------|--|
| ㉑ 증여세액 | |
|--------|--|

3. 이자상당액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㉒ 일수 | |
| ㉓ 이자율 | |
| ㉔ 이자상당액 (㉑ × ㉒ × ㉓) | |

4. 납부할 세액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㉕ 납부할 세액 (㉑ + ㉔) | |
|------------------|--|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3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(관리번호: ☎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표시합니다.
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⑦ 증여자와의 관계"란 :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. (예시 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: 자)
- "⑬ 재산구분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| 재산구분 | 증여재산 | 증여재산 (영농재·농수증농지 감면) | 비과세재산 | 과세가액불산입 (공익법인 출연재산) | 과세가액불산입 (공익신탁 재산) | 과세가액불산입 (장애인 신탁재산) | 증여재산가산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코드 | 01 | 02 | 03 | 04 | 05 | 06 | 07 |

- "⑭ 재산종류"란 : 토지, 건물,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
- "⑮ 지목 또는 건물·재산종류"란 :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(전, 답 등)을 기재하고, 주택,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(아파트, 상업용건물, 오피스텔 등) 등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(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, 상장주식 등)을 기재합니다.
- "⑯ 소재지·법인명 등"란 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.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어부에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·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.
가.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)을 기재합니다.
나.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(예시 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㈜○○건설)을 기재합니다.
- "⑳ 사후관리 위반코드"는 아래와 같습니다.

| 사후관리 위반유형 | 관련 조문 | 코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| 01 |
|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제1호 | 02 |
|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제1호 | 03 |
|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제2호 | 04 |

- "㉑ 증여세액"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.
- "㉒ 일수"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- "㉓ 이자율"란에는 1일 10만분의 22*를 적습니다.
*2022.2.14.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